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때에도 그 질병의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3년의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0808호, 2025. 3. 18. 공포, 2025. 9. 19. 시행) 됨에 따라,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대상의 치료 이력 확인을 위해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 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군 병원외에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서 제출 시기는 전공의 정기모집 일정에 따라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병무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병역에 관한 신고·출원을 대리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 및 대리인의 범위 구체화(안 제3조)
- 나. 학생군사교육단 간부후보생 선발 신체검사를 군 병원뿐만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 지정병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신설(안 제116조)
- 다.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 기한의 예외 규정 신설(안 제119조)
- 라. 공직자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된 이후에도 질병 등 치료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를 해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제155조의4)
- 마.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시 진료기록 등 요청에 따른 민감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157조)
- 바. 병무청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의 의료시설 지정 및 취소와 관련한 권한·요건·절차의 근거 마련(안 제168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출항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출원이 어려운 경우
4.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로 인해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출원이 어려운 경우
5.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어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출원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출원이 어렵다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세대주

3.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성년자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5조의2에 따라 본인을 대리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4. 진단서 등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 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

사를 받아야하고, 그 결과를 군 병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119조제2항 전단 중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수련기간·수련연도를 별도로 정하여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람 등 병무청장이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수련 시작일부터 15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5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왜소증이 있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2.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3.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4.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이 없는 사람
5.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寛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에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③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른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질병명, 진료기간, 진료 및 검사 소견에 관한 기록: 의료기관의 장
2. 질병명, 병원명, 진료일자, 입·내원 일수 등 진료이력에 관한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 3.약품명 등 약물의 처방 및 조제내역에 관한 기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제155조의4제5항(종전의 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관리 및 변동사항”을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로, “같은 조 제2항”을 “다음”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6항”으로 한다.

1.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

2. 이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진료기록 등 자료

제157조제2항 중 “전역”을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로 한다.

제168조의 제목 “(의료시설의 지정 등)”을 “(의료시설의 지정 및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정병원이 선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시설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군간부후보생 선발신체검사에 참조할 수 있는 군간부후보생 선발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으며, 그 지정·취소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청장”은 각각 “각 군 참모총장”으로, “병역의무자”는 “군 간부후보생”으로, “병무용진단서”는 “군 간부후보생 선발용진단서”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에 관한 특례) 2024년 8월 22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제1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서를 해당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 등) ①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출원 절차 등) ①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 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3.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출항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출원이 어려운 경우 4.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출원이 어려운 경우 5.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② 병역의무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 중 성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인(受領人)에게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형의 집행 중에 있어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출원이 어려운 경우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신고 또는 출원이 어렵다고 병무청장 또는 지방 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

②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대리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2. 세대주

3.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성인자

③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 제5조의2에 따라 본인을 대리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할 때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및 다음 각 호의 서류 중에서 대리관계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6조(학생군사교육) ① (생략) <u><신 설></u> ② (생략)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생략)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본 4. 진단서 등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6조(학생군사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또는 부사관후보생과정에 지원한 사람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신체검사 기준에 따라 군 병원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하고, 그 결과를 군 병원에 제출해야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19조(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 편입)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의료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은 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 되는 날)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사법연수원에 입교한 해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이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수의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수의과대학 본과 3학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까지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수련기관,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수의과대학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무·

------(「의료
법」에 따라 긴급하게 의료인력
을 충원할 필요가 있어 실시하
는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 또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제7항에 따라 수련
기간·수련연도를 별도로 정하
여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된 사
람 등 병무청장이 의무사관후보
생 지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
람은 수련 시작일부터 15일이
되는 날)-----

법무 또는 수의 분야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전담 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 수의사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③ ~ ⑧ (생략)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생략)

<신 설>

-----.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55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7조의4제5항 단서에서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왜소증이 있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양쪽 귀가 없는 사람
2. 사지(四肢)의 마비나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3.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 또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으로 등록된 사람
4. 손가락이나 발가락 중 3개 이상 없는 사람

<신 설>

<신 설>

5. 악성 혈액질환[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골수이형성증후군, 악성 림프종 또는 관해(寛解)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으로 한정한다], 선천성 면역결핍질환, 애디슨씨병 또는 랑게르한스조직구증(전신적 항암치료로 치료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확진된 사람

③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른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에 이용되었던 사례가 있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2.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

④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7조의4에 따른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 및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호를 말한다.

1. 질병명, 진료기간, 진료 및 검사 소견에 관한 기록: 의료기관의 장

2. 질병명, 병원명, 진료일자, 입·내원 일수 등 진료이력에 관한 기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3. 약품명 등 약물의 처방 및 조제내역에 관한 기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

⑤ -----

----- 관리, 변동사항 확인
및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이나 심신장애의 ---- 다음 --

-----.

-----.

1. 법 제77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

2. 이 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진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및 제155조의5 외에 법 제77조의4에 따른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생 략)

②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법에서 정한 병역의무자의 병역준비역 편입,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 검사 및 확인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입영판정검사, 징집, 모집, 소집, 입영, 복무, 전역 및 병역 명문가 선정 등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나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

료기록 등 자료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⑦ ----- 제6항-----

-----.

제1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역,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

합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

③ (현행과 같음)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 및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지정병원이 선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 등 지방병무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시설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⑥ 각 군 참모총장은 군간부후보생 선발신체검사에 참조할 수 있는 군 간부후보생 선발용진단서 발급의료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으며, 그 지정·취소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청장”은 각각 “각 군 참모총장”으로, “병역의무자”는 “군 간부 후보생”으로, “병무용진단서”는 “군 간부후보생 선발용진단서”로 본다.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방부 인력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5139
국방부 보건정책과	
연 락 처	(02) 748 - 6656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2641